

논문집발간 규정

제정 2013. 3. 1. 개정 2013. 11. 15.
개정 2016. 12. 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 논문집(이하 “논문집”이라 한다)의 발간에 있어서 논문의 투고, 심사 및 기타 논문집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관) 논문집의 발간은 연구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주관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<개정 2013.11.15.>

② 위원회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한다. <개정 2013.11.15., 2016.12.23.>

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논문 청탁 및 편수의 결정과 배정
2. 신청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의뢰
3. 논문 심사 결과 취합 및 게재 결정
4. 논문의 편집
5. 기타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제반 사항

제5조(위원회의 소집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의결) 위원회는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발간횟수) 논문집은 년 1회 이상 발간한다.

제8조(투고자격) 원고 투고자격은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본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(겸임 및 초빙)에 한한다.

제9조(논문의 체제) 논문집에 투고하는 원고 체제에 대하여는 “논문 작성 요령”을 정하여 그 요령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.

제10조(논문의 접수와 시기) 논문은 위원회에서 접수하며, 그 시기는 논문발간일 3개월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.

제11조(논문의 게재과정) 제출된 논문은 “전공별 심사위원 위촉-심사의뢰-심사결과 수집 및 심의” 과정을 거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2조(심사자의 위촉) ① 심사위원 위촉 및 의뢰는 논문 제출자에게 비밀로 하되, 최종 심사 결과 후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.

② 심사자 위촉은 연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③ 심사위원의 위촉 기준은 전공 분야별 권위 있는 외부 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, 가급적 친·인맥, 학

맥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.

④ 심시위원은 총 3인을 기준으로 한다.

⑤ 전공자를 찾기 어려운 논문이나 내부 심사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부 심사를 하되 그 인원은 3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3조(논문심사) ① 심사결과 “A(게재)” · “B(보완게재)” · “C(수정 후 재심사)” · “D(게재불가)” 로 평가하도록 하며 3인중 2인 이상이 B등급 이상(게재 또는 보완게재)으로 평가할 경우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2인 이상이 “D(게재불가)” 등급으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.

③ 2인 이상이 “C(수정후 재심사)” 로 평가할 경우 위원회는 논문을 수정하도록 논문게재자에게 요구한 후 최초 심사 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.

④ 재심은 1회에 한하며, 재심의뢰 후 최종결과가 제13조 제1항의 원칙에 적용하면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4조(논문심사료) ① 본 대학 전임교원, 겸임교원, 초빙교원의 경우는 학교에서 논문심사료를 전액 지원하며, 외래교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논문심사료를 부담한다.

② 재심사의 경우는 전임 및 겸임(초빙포함), 외래교원 모두 본인이 부담한다.

제15조(논문의 교정) 논문의 인쇄 교정은 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교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16조(논문집 발간) 접수된 논문 편수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 발간을 유보할 수 있다.

제17조(논문의 배부 및 별쇄본 지급) ① 논문집은 논문 게재자에게 1부씩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며, 별쇄본은 1인당 5편씩 제작하여 배부한다. 다만, 그 이상 필요로 하는 별쇄본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.

② 공동연구자의 경우 개인별 5편씩 별쇄본을 배부한다.

제18조(저작권) 대경대학교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대경대학교에 있다.

제19조(자료의 납본 및 저작물 이용 동의) 본 대학, 학부(학과), 연구소 및 기타 기관이 간행하는 자료는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며, 납본 저작물은 특별한 동의 절차 없이 다음 각 호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저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저작물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 및 반대사유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을 통한 복제 및 DB구축
2. 학술 연구 목적의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의 배포 및 전송
3. 본 대학과 협약을 맺은 기관에 대한 저작물 제공 및 인터넷 서비스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